

#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복리후생 규정

제정 2001. 1. 1. 규정 제13호	개정 2012. 9. 17. 규정 제247호
개정 2004. 7. 12. 규정 제78호	타)개정 2012. 12. 27. 규정 제252호
개정 2005. 5. 10. 규정 제94호	개정 2013. 4. 1. 규정 제254호
개정 2005. 10. 11. 규정 제97호	개정 2013. 6. 28. 규정 제259호
개정 2006. 5. 1. 규정 제106호	타)개정 2013. 12. 26. 규정 제267호
개정 2006. 12. 28. 규정 제126호	개정 2014. 6. 23. 규정 제273호
개정 2007. 7. 10. 규정 제135호	타)개정 2015. 4. 13. 규정 제279호
개정 2008. 1. 23. 규정 제148호	개정 2015. 4. 13. 규정 제283호
개정 2008. 6. 3. 규정 제159호	개정 2017. 1. 12. 규정 제303호
개정 2009. 1. 15. 규정 제173호	개정 2017. 1. 20. 규정 제306호
타)개정 2009. 12. 28. 규정 제202호	타)개정 2018. 12. 28. 규정 제329호
개정 2010. 1. 18. 규정 제205호	개정 2019. 12. 24. 규정 제343호
개정 2010. 12. 29. 규정 제223호	타)개정 2020. 5. 14. 규정 제347호
개정 2011. 12. 30. 규정 제236호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임·직원의 정서함양은 물론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과 복리후생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공단의 임·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공단설치조례, 정관 및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정에서 “직원”이라 함은 임원 및 직원을 말한다.

③삭제 <개정 2015.4.13 규정 제283호>

## 제2장 안전과 보건

**제3조(안전 및 보건관리)** ①공단은 직원의 건강상태와 환경조건을 수시로 조사하여 안전에 위태롭거나 위생에 해로운 시설을 개선하는 등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직원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건강진단)**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년 1회 이상, 기타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개정 2004.7.12 규정 제78호>

제5조(의료시설)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공단 내에 의료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외부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제3장 복 리 후 생

제6조(후생기구 및 시설) 공단은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새마을금고 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와 구내식당 및 휴게소 등 후생복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복리후생비 지급) ①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급식보조비 <개정 2005.10.11 규정 제97호>
2. 직책수행비 <개정 2017.1.12 규정 제303호>
3. 명절휴가비 <개정 2005.10.11 규정 제97호>
4. 삭제 <개정 2017.1.12 규정 제303호>
5. 삭제 <개정 2017.1.12 규정 제303호>
6. 삭제 <개정 2017.1.12 규정 제303호>
7. 삭제 <개정 2004.7.12 규정 제78호, 개정 2006.12.28 제126호>

② 복리후생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강등의 경우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과 휴직 및 정직기간 중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업무직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05.5.10 규정 제94호, 개정 2006.5.1 규정 제106호, 개정 2006.12.28 규정 제126호, 개정 2008.1.23 규정 제148호, 개정 2010.12.29. 규정 제223호, 개정 2011.12.30 규정 제236호, 개정 2012.9.17 규정 제247호, 타)개정 2012.12.22 규정 제252호, 개정 2013.4.1 규정 제254호, 개정 2013.6.28 규정 제259호, 개정 2017.1.12 규정 제303호, 개정 2017.1.20 규정 제306호, 타)개정 2018.12.28 규정 제329호, 개정 2019.12.24 규정 제343호>

제7조의 2(시간선택제 근무를 하는 직원 등의 복리후생비 지급)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인사 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등은 해당 직원이 정상근무할 때에 받을 복리후생비 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4. 6. 23 제273호, 타)개정 2015.

4. 13. 규정 제279호>

제8조(기타 후생비) ① 공단은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기타 후생비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명목과 금액을 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개인별 선호에 따라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복지제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한다. <개정 2008.6.3 규정 제159호>

제9조(주택 대여금) 공단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사택 또는 임대 주택을 대여하거나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 2(대학생 자녀학자금 대부) 공단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학생자녀학자금을 대부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방법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07. 7. 10 제135호>

제10조(통근차량 운행) 공단은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근차량을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피복지급) 공단은 피복지급 규정에 따라 업무수행에 적합한 피복을 직원에게 지급하여 착용하게 할 수 있다.

## 제 4 장 재 해 보 상

제12조(재해보상)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이를 보상한다. <개정 2013.4.1 규정 제254호>

제13조(요양보상) 삭제 <개정 2013.4.1 규정 제254호>

제14조(장애보상) 삭제 <개정 2013.4.1 규정 제254호>

제15조(유족보상) 삭제 <개정 2013.4.1 규정 제254호>

제16조(휴업보상) 삭제 <개정 2013.4.1 규정 제254호>

제17조(일시보상금) 삭제 <개정 2013.4.1 규정 제254호>

제18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삭제 <개정 2015.4.13 규정 제283호>

제19조(보상의 경감) 삭제 <개정 2015.4.13 규정 제283호>

제20조(준용) 직원의 재해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근로 기준법에 의한다.

## 제 5 장 체 육

제21조(직장체육진흥) 직원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관계법령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체육행사 등) ①직원의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시설 및 행사를 할 수 있다.

②직원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취미클럽을 육성 발전시킴에 적극 지원한다.

## 제 6 장 보 칙

제23조(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부칙 (규정 제13호)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규정 제7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규정 제94호)

이 규정은 2005년 5월 10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규정 제97호)

이 규정은 2005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규정 제106호)

이 규정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하되, 2006년 4월 2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규정 제126호)**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135호)**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규정 제148호)**

이 규정은 승인일(2008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159호)**

이 규정은 승인일(2008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173호)**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20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⑤(생략)

⑥복리후생규정 중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중 직책수행비란의 “센터장”을 “단장”으로 한다.

⑦~⑩(생략)

**부칙 (규정 제205호)**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223호)**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236호)**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규정 제247호)**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규정 제25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②(생략)

③복리후생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지급대상 중 “본부장·실·단·센터장”은 “처장·본부장·실장”, “팀장·관장(2급 이상)”은 “팀·센터·관장(2급이상)”, “팀장·관장(3급이하)”는 “팀·센터·관장(3급이하)”로 한다.

④~⑰(생략)

**부칙 (규정 제254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259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26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273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283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303호)**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306호)**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32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복리후생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복리후생비 지급기준표의 지급대상란 중 “이사”를 “본부장”으로, “처장·본부장·실장”을 “처장·실장”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규정 제34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부칙 (규정 제3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②복리후생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복리후생비 지급기준표 중 “팀장·센터장·관장(2급이상)”을 “팀장·센터장·관장·원장(2급이상)”으로, “팀장·센터장·관장·파트장(3급이하)”를 “팀장·센터장·관장·원장·파트장(3급이하)”로 한다.

[별표 1] <개정 2005. 5.10 규정 제94호, 개정 2005.10.11 규정 제97호, 개정 2006.5.1 규정 제106호, 개정 2006.12.28 규정 제126호, 개정 2007.7.10 규정 제135호, 개정 2008.1.23 규정 제148호, 개정 2009.1.15 규정 제173호, 타)개정 2009.12.28 규정 제202호, 개정 2010.1.18 규정 제205호, 개정 2010.12.29 규정 제223호, 개정 2011. 12. 30 규정 제236호, 개정 2012.9.17 규정 제247호, 타)개정 2012.12.22 규정 제252호, 개정 2013.4.1 규정 제254호, 개정 2017.1.12 규정 제303호, 개정 2017.1.20 규정 제306호, 타)개정 2018.12.28 규정 제329호, 개정 2019.12.24 규정 제343호, 타)개정 2020.5.14 규정 제347호>

### 복리후생비 지급기준표(제7조 관련)

구 분	지급대상	지 급 액	비 고
급식보조비	직 원	월 130,000원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
직책수행비	이 사 장	월 1,300,000원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
	본 부 장	월 1,000,000원	
	처장·실장	월 800,000원	
	팀장·센터장·관장·원장 (2급이상)	월 750,000원	
	팀장·센터장·관장·원장· 파트장(3급이하)	월 700,000원	
명절휴가비	직 원	월 봉급액의 연 100%	매년 설날, 추석에 속하는 달에 각 1/2씩 지급

[별표 2] 삭제 <개정 2013.4.1 규정 제254호>